서명수 구성원변호사



TEL.
02-3479-2307

MAIL.
myungsu.suh@barunlaw.com

구성원 소개

서명수 변호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형사분야, 기업 관련 각종 민·형사 소송을 전문분야로 합니다.

서 변호사의 주요 업무사례로 해외유전개발 관련해 국내에서 처음 제기된 소송에서 석유공사를 대리해 항소심에서 1심패소를 뒤집고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서명수 변호사는 1982년 판사 임용되어 2010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퇴임 후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합류했습니다. 판사 재직 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5년간 무수한 대법원 상고사건을 담당하여 해박한 법리를 자랑합니다. 부장판사 재직 시에는 기업 지배권 관련 분쟁, 법인 간의 소송 등 기업·상사사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중요기업 경영자 등 횡령·배임 사건 등 형사사건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학력

1975	서울고등학교 졸업
198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0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1982	사법연수원 제12기 수료
2000	미국 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경력

1982 ~ 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 판사
1993 ~ 1994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4 ~ 1999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9 ~ 2005	인천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수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2 ~ 2005	서울 중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05 ~ 2006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고법부장)
2006 ~ 2010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0 ~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형사

- 부산저축은행 대출관련 캄보디아 사업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

최근업무사례

[민사] 해외유전개발 관련 국내 첫 케이스(400억원 상당 소송)에서 승소 석유공사 대리해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확정

[형사] "검사에 의해 조작된 신문조서는 증거능력 없다" 전 00시장, 20억원 뇌물 약속 및 2억3천만원 뇌물사건 무죄 이끌어내

[행정·조세] 1000억 원대 석유수입부과금 환수 소송에서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

주요업무분야

기업형사
재건축 재개발
금융소송
보험·재보험 및 해상·해운
헌법소송
건설·부동산

령, 배임) 사건
- 국회의원(지역구, 비례대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 오산시장, 해남군수, LH감사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 슈퍼개미 관련 자본시장법 사건
- 대한전선 부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사건

행정

-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사건
- 북아현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취소사건
- 금지금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민사·상사

- 리버사이드 호텔 신주발행무효 소송,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및 본안사건
- 대우건설포스코건설 교동교량공사 조합출자금 청구사건
- 이수건설 책임준공 관련 대여금 청구사건
- 우리은행의 예금부당인출로 인한 예금 청구사건
- 하남문화원장 선거효력과 당선자에 관한 가처분 및 본안사건

저서 및 논문

- 소송고지로 인한 참가적 효력의 범위, 민사재판의 제문제, 1993
- 불구속 피고인.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 대법원판례해설 제25호, 1996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를 공제할 것인지의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27호, 1997
- 법인의 비자금과 횡령죄, 형사재판의 제문제3, 박영사, 2000